



Korean Tax Newsletter

2024년 5월

CONTENTS

세법개정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시행

세무동향

- 국세청,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예규판례

○ 법원

- 이전공공기관 취득·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으로 최소납부세제(감면율 85%)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종전 규정(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면적 계산 규정의 구체적 적용 관련,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할인판매 관련, 점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완전모자회사 간 적격합병에서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사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배당금을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의 의미
-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 해외 자회사 대여금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출자전환손실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및 세무처리 방법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인건비 제한규정’) 적용여부
-

세법개정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시행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5.28.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5.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기존 1주택자가 '24.1.4. 부터 3년간('26.12.31.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3.28.일부터 2년간('25.12.31.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 적용

○ 빈집 정비 지원

-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서,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세무동향

국세청,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상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AI 국세행정'의 첫걸음을 내딛을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4.5.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AI 국세상담 서비스

-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 2백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킴
-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상승

○ AI 홈택스 개통 준비

- 2024년부터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AI 홈택스' 개통을 준비
-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한편,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세무서식 위주의 복잡한 화면을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개편

예규판례

[법원] 이전공공기관 취득·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으로 최소 납부세제(감면율 85%)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종전 규정(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대법원 2024.2.8. 선고 2023 두 5915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쟁점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는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원주시로의 본원 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15.12.경 취득하였고,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1 조 제 1 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함. 2015.12.29. 법률 제 136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전 지특법') 제 81 조 제 1 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이후 2015.12.29. 법률 제 13637 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후 지특법')은 제 177 조의 2 에 따라 제 81 조 제 1 항의 경우 재산세를 5 년간 85% 감경하도록 개정됨. 피고는 이에 2016 ~ 2020 년도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함. 한편, 피고는 2020.7.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정 후 지특법에 따라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20 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음. 원고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2.2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2.23. 기각되었음

판결요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0.18. 선고, 2022 누 1291 판결, 원고 승)

재산세는 부과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 제 115 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 월 1 일 기준 그 소유자에게 성립함. 이 사건 부칙 제 1 조는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을 2016 년 1 월 1 일부터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칙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 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이기는 함

그런데 이 사건 부칙 제 6 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고, (...)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정 전 지특법이 적용되던 때로서 개정 전 지특법 제 81 조, 제 177 조의 2 단서 및 제 2 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6 년도분부터 2020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전부가 면제된다는 신뢰가 이미 존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부칙 제 6 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지특법에 따라 면제할 예정이었던 위 5 년분의 재산세도 이 사건 부칙 제 6 조에 근거해 계속하여 면제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③ (...) 2015 년도 중 어느 시점에 취득하였는지 간에 개정 전 지특법에 따라 2016 년도부터 2020 년도까지의 재산세 전부가 면제된다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은 동일함에도 위와 같이 자의적으로 구별할 별다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6 년도부터 2020 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전부가 면제된다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부칙 제 6 조에 따라 보호함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2020 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있어 개정 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함

[조세심판원]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면적 계산 규정의 구체적 적용 관련,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 지 0464, 2024.3.25., 경정)

■ 쟁점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의 산출방식에 대한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 11 조의 2)을 근거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000 일원 토지 52,223.4 m²(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위의 토지 중 29,387.66 m²를 신탁받았고, 2011.3.30.부터 2018.9.19.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양시 000 등 토지 14,619.24 m²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11.5.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 외 6 필지 토지 8,216.5 m²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2022.7.5.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 전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부지는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0,132.41 m²,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3,717.19 m²,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 m²(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로 귀속되었음.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 7 조 제 8 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 32747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11 조의 2(이하 '쟁점조항')를 적용하여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비조합원용 토지 13,346.368 m²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한 것으로 보아, 2022.7.22. 처분청에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 m²(일반분양분 토지 23,717.19 m²,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 m²) 중 31,209.14 m²(기 신고납부 면적 22,835.74 m²,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 m²)를 차감한 토지 881.45 m²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나, 비조합원용 토지 13,346.368 m²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을 「지방세법」 제 7 조 제 8 항에 따라 산정하면 32,090.59 m²(일반분양분 토지 23,717.19 m²,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 m²)이고, 「지방세법」 제 7 조 제 8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13,346.368 m²이나, 청구법인은 2011.3.30. 부터 2021.11.5. 까지 사이에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 무상양여받은 토지 22,835.74 m²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여기에 추가하여 2022.7.22. 토지 13,346.368 m²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 36,182.1 m²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지방세법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 32747 호로 개정된 것) 제 11 조의 2 규정은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의 산출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 m²(일반분양분 토지 23,717.19 m²,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 m²)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토지 36,182.1 m²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 m²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이나 감면받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등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토지 4,091.51 m²(신고·납부한 면적 36,182.1 m² - 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 m²)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 m²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할인판매 관련,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 서 9469, 2024.3.29., 기각)

■ 쟁점

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스포츠 의류 등의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 판매하는 스포츠용품업체 A 그룹의 국내 판매법인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부 직영매장 등 소매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A Employee Store 2 곳(이하 '쟁점할인매장')에서는 청구법인 직원과 A 그룹 관계사 직원, A 신발 생산 협력업체 직원, 청구법인의 C 물류센터 내 파견업체 직원 등(이하 '쟁점협력업체')에게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제품을 최종소비자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 조사청은 '20.5.14.~'22.4.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할인매장을 통해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에게 최종소비자가격 대비 40%('18.9.1. 이전 기간에는 50%)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이하 '쟁점할인판매')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본 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 이에 처분청은 2018 ~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3.7.20.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법인세법령상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점,

그런데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이고, 쟁점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의 사업인 A 상품의 유통·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상품의 제조·생산 등과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A 그룹 내 관계회사로,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에게 쟁점할인판매를 하여야 할 계약상·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한편, 쟁점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목적이 매출 및 수익증대라면 할인판매 대상자를 쟁점할인업체 소속직원에게 한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결국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에게 쟁점할인판매를 하는 것은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쟁점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나아가 쟁점할인판매 대상물품에는 신제품 등 일반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하는 제품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할인판매 시 적용된 할인율은 40~50% 수준으로 상당히 높으므로, 쟁점할인판매를 통상적인 판촉이나 마케팅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 서 7744, 2024.4.11., 기각)

■ 쟁점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이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면서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1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22.10.20.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31.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 조의 32 제 4 항 제 2 호 라목(2022.2.15. 대통령령 제 324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을 기업소득 산정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2022 년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의 법령의 개정만으로 2021 사업연도 이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완전모자회사 간 적격합병에서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사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 지 3474, 2024.4.15., 취소)

■ 쟁점

완전모자회사 간 적격합병에서,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법인세법」 제 44 조의 3 제 3 항 제 3 호(이하 '쟁점사후관리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7 조의 2 제 1 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20.3.3. 토지 706,769 m²(이하 '쟁점부동산')를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이하 '피합병법인')와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4.16.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합병등기일(2020.3.5.)부터 3년 이내인 2021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청구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계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2023.1.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3.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 44 조 제 3 항에서 적격합병의 경우를 추징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대구고등법원 2010.1.22. 선고 2009 누 1533 판결)임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 44 조의 3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조심 2022 지 1342, 2023.10.25. 결정 참조)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면규정의 단서를 이유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배당금을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 서 2050, 2024.4.18., 취소)

■ 쟁점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 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인 외국법인들(이하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이하 'TRS') 상품을 판매하고, TRS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주식의 가격변동분, 이자, 배당 등 국내주식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중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을 '쟁점금액'이라 함)은 외국투자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음. 조사청은 2020.5.7. ~ 2020.8.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TRS 계약상 청구법인에게는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투자자들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은 위 배당소득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자로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 2020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각 경정·고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당해 국내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이 직접 행사하게 됨.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했던 국내주식을 매각한 후 다시 별도의 TR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헤지를 할 수도 있으므로, 국내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음. 반면, 외국투자자는 국내주식에 대한 자익권, 의결권, 각종 소 제기권 등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오로지 TRS 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주식 양도차익, 배당금 등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권리(또는 양도차손을 보전해 줄 의무)만을 가지게 됨. 또한 외국투자자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국, 국내주식의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외국투자자는 국내주식에 대하여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주식 소유에 관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외국투자자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i) 국내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과 ii) TRS 계약을 통해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TRS 계약을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후자의 방식은 전자의 방식에 비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더 많은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즉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통하여 투자함으로써, 보다 적은 자금으로 더 많은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됨. 또한, 외국투자자는 TRS 계약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파생상품의 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도 기초자산인 국내주식을 매수하는 대신 TRS 계약을 활용할 수 있음. 요컨대, 외국투자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충분함(대법원 2022.1.14. 선고 2021 두 51973 판결, 같은 뜻임)

(...)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의 국내주식 소유에 있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외국투자자에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의 의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373, 2024.5.3.)

■ 질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99 의 9)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 안) '사업장 신설'에 해당 → 적용 가능
- (2 안) '사업장 신설'로 보기 곤란 → 적용 불가능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A 는 '21.2.16. 전남 무안군에서 영위하던 사업장 폐업 (업종) '18.3.5. "부동산중개, 부동산자문 및 컨설팅업" 창업 → '20.6.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을 부업종으로 추가 → '21.1.27. 부업종 삭제
- A 는 '22.5.23. 전남 목포시(산업위기지역, '18.5.29. ~ '23.5.28.)에서 폐업 전과 유사한 업종의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신규 사업자등록) (업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부업종으로 함
- 폐업한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99 의 9⑦ 및 §6⑩에 따라 '창업기업'의 범위에서는 배제됨

회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의 9 제 1 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자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5.21.)

■ 질의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신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 14 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 14 조를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4 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청]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414, 2024.3.14.)

■ 질의

할증평가 제외되는 상증령§53⑧(1)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상증령§56④에 따른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 A 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甲은 2022.5 월경 해당 A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B 법인에게 증권사를 통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함(할증하지 않은 가액으로 양도)
- 매도자(개인 甲)와 매수자(B 법인)는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거래를 통해 1% 이상 지분율이 변동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 甲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20%를 가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 제 1 항에 따르면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3 조 제 8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하고 있음
- A 법인은 최근 3년간 「법인세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3 조 제 8 항 제 1 호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

회신

「소득세법」 제 10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7 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 분의 20 을 가산하는 것이나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3 조 제 8 항 제 1 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 제 1 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해외 자회사 대여금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출자전환손실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및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4.18.)

■ 질의

질의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인 갑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쟁점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쟁점 출자전환이 국조법 제 4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호에서 열거하는 채무의 면제로서 법인세법 제 52 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 완전자회사 갑법인에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갑법인 주식을 취득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 52 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국세청]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⑩(‘인건비 제한규정’)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003, 2024.5.16.)

■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⑩(이하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특법§74①(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
- 비영리법인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령§56⑥), 「조특법§74①(2)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됨으로써(법인령§56⑩(2)) 8 천만원(연간 임직원별)을 초과하는 인건비의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8 천만원을 초과하여 직원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임(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을 참고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⑩은 적용되지 않음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파트너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파트너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Back to top](#)